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 현재 체육진흥 조례 상,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,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,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,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 안 제18조의3의 경우,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